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8-81
----------	-------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 (안 제1조 ~ 제2조)
- 나.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대상(안 제3조 ~ 제4조)
- 다. 교복구입 지원금액, 지원절차(안 제5조 ~ 제6조)
- 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환수조항 등 (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나.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다.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8. 9. 6. ~ 9. 27. (제출의견 없음)
- 2)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동의
- 3)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권고사항 있음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8.10.11.)
-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 1부
- 6) 비용추계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이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재학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입학연도의 구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교명			
주 소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은행명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금액	원
------	---------------------------------	------	---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 (입학) 확인
 -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제3조 교복구입비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①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

※ 2019년 교육부 교복 공동구매 상한가 301,163원

② 지원대상 : 2019년~2023년 중학교 입학생 14,265명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중학생	14,265	2,738	2,774	2,825	3,098	2,830

※ 2018년 2/4분기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인구통계(2018. 6.30 기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세출	교복구입비	821,400	832,200	847,500	929,400	849,000	4,279,500
□	총 비용(a-b)	821,400	832,200	847,500	929,400	849,000	4,279,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자체수입	지방세수입등	821,400	832,200	847,500	929,400	849,000	4,279,500
합계		821,400	832,200	847,500	929,400	849,000	4,279,500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이영주
연락처	02-3153-8953